

문서번호	기획조정실-7276
보존기간	영구
결재일자	2015.12.10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219호

★과장	팀장	기획조정실장	경영지원본부장	이사장
협 조				

---

## 직제규정시행내규 중 개정내규(안)

---

2015.

# 직제규정시행내규중개정내규(안)

(제안요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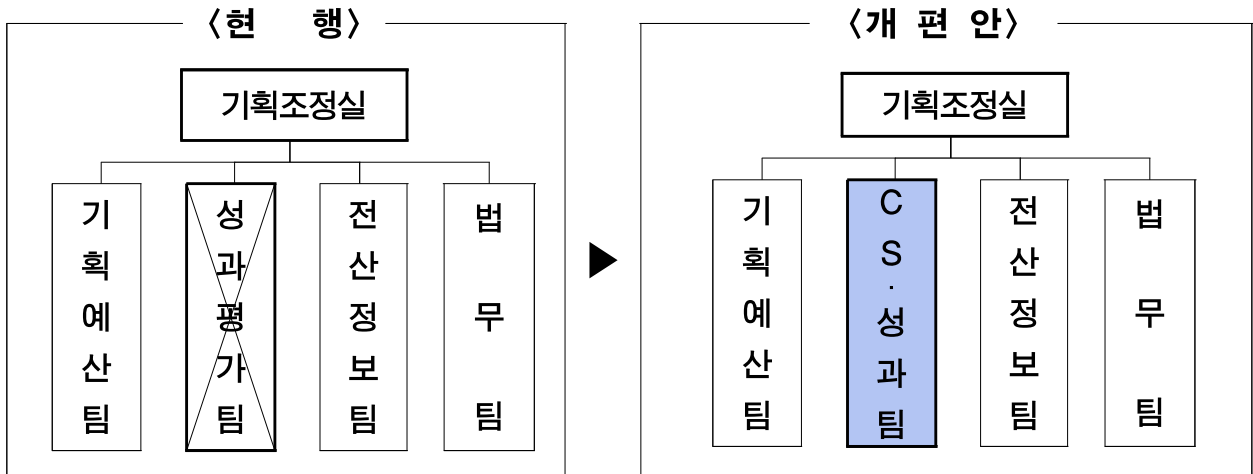
## 1. 제안이유

가. 『조직개편 추진계획(안)』 (이사장방침 제215호, '15.12.4)에 따른 현행 '처' 산하 '팀' 단위 기구개편 등 조직체계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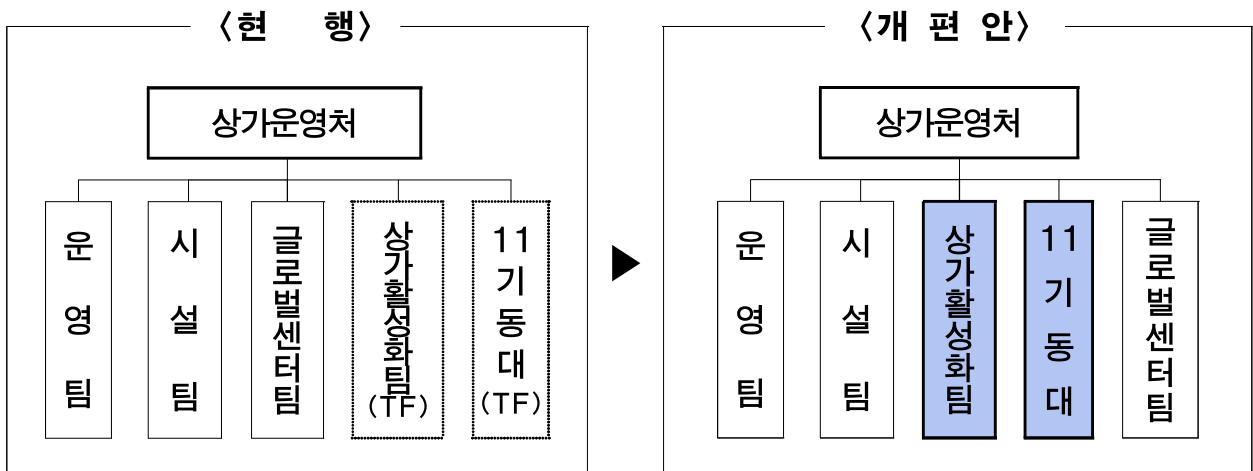
## 2. 주요내용

가. 기구개편(제3조 “별표1”)

- 기획조정실 산하 '성과평가팀'을 'CS·성과팀'으로 명칭변경하고, 시민만족 강화를 위한 CS기능 및 역할 강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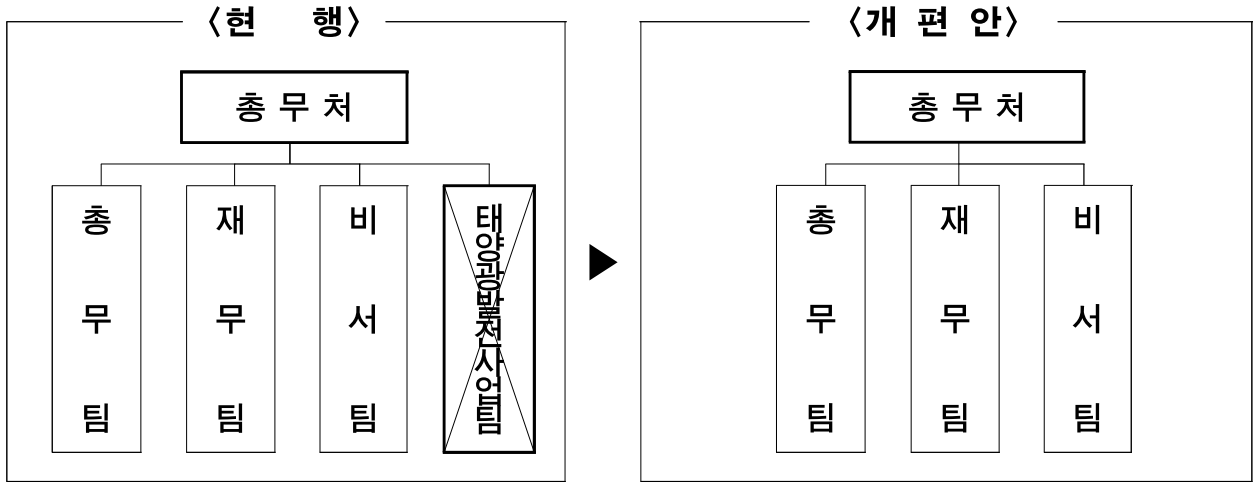
- 상가운영처 산하 상시지속 기능 임시기구(TF팀) 정규조직화 : 증 2팀
  - ▶ 주요내용 : 상가활성화TF팀 → 상가활성화팀 / 11기동대TF → 11기동대
  - ▶ 관련근거 : 공단 상가운영처 정규조직화(안) 승인(보도환경개선과-4527호, '15.12.8)



○ 총무처 산하 ‘태양광발전사업팀’ 기구 폐지(’16.1.1부) : 감 1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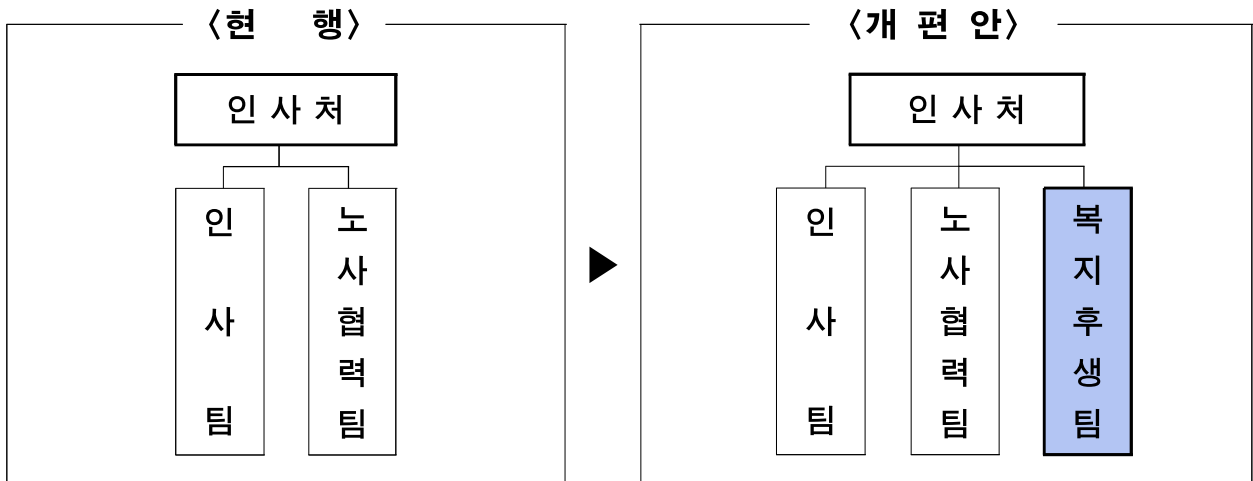
- ▶ 2016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의 공단위탁 중단 市정책결정에 따라 관련기구 폐지
- ▶ 관련근거 : 2016년 태양광발전시설 민간위탁사업 교부금 미편성 안내

(녹색에너지과-24389호, ’15.12.4)



○ 준공무직 공무원 전환 등 관리대상 인력증가에 따른 노무 및 임직원 복리 후생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, 인사처 산하 ‘팀’ 단위 기구개편 : 증 1팀

- ▶ 현행 ‘노사협력팀’은 노무업무 전담, 급여 등의 업무는 ‘복지후생팀’ 신설 후 이관



<참고1> 타 투자기관 대비 노무인력 비교

구 분	전체인력 (공무직 등 포함)	노사관계 및 복지후생 관련				비 고
		운영조직	인 력			
			계	노 무	임금후생	
메트로	9,491	1처 2팀	20	9	11	식당운영 : 경영관리처
도시철도	6,685	1실 2팀	19	8	11	식당운영 : 총무지원처
sh공사	1,101	1팀	10	5	5	식당운영 : 경영지원처
공 단	2,895	1팀	6	2	4	식당, 상조회 9명 별도

<참고2> **현행 노사협력팀 기능분리에 따른 업무분장(안)**

노사협력팀	복지후생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노사관계 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</li> <li>· 노사협의회 및 단체협상에 관한 업무 총괄</li> <li>· 노사현안 처리 및 대책 수립</li> <li>· 근로자고충처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· 사내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</li> <li>· 기타 노사관계 업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급여 및 소득정산, 사회보장성 보험 등</li> <li>· 근태·복무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</li> <li>· 선택적복지제도 및 휴양소 운영</li> <li>· 학자금, 단체보험, 직장어린이집 관련 업무</li> <li>· 구내식당 운영 등 상조회 관련 업무</li> <li>· 기타 임직원 복리후생 관련 업무 총괄</li> </ul>

**나. 정원조정(제3조 “별표2”) … 現 「총 정원」 범위 내**

- **CS기능 강화 및 성과관리 고도화 관련 기획조정실 인력보강 : 증 2명**
  - ▶ CS종합계획 수립 및 서비스 품질 제고, 외부평가 업무 내실화 등 2명
- **노무 및 임직원 복리후생 업무 증가에 따른 인사처 관련인력 증원 : 증 5명**
  - ▶ 노사관계 현안 처리 등 2명 / 복무관리,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3명(팀장1 포함)
- **태양광발전사업 위탁중단에 따른 관련정원 감축 : 감 7명**

**<부서별 정원 조정내역>**

구 분	현행	개정	증감	직급·직렬별 세부내역
계	97	97	(-)	
기획조정실	29	31	(+2)	· 4급 1명(사무1) / 5급 1명(사무1)
인 사 처	23	28	(+5)	· 2급 1명(일반직) · 4급 3명(사무3) / 5급 1명(사무1)
총 무 처 (태양광발전)	45 (7)	38 (-)	(Δ7) (Δ7)	· 2급 1명(일반직) · 4급 4명(사무1, 시설1, 설비2) · 5급 2명(설비2)

## 다. 업무분장

- 기획조정실(제23조 제2항) : CS관련 업무 구체화
- 인 사 처(제24조 제2항) : 노사관계사항 등 업무 확대·추가
- 총 무 처(제25조 제2항) :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업무 삭제  
→ '직제규정'상 총무처 해당 분장업무 조정은 추후 규정개정시 별도 반영

## 라. 부칙 신설 : 시행일(공포일부터 시행)

- 다만, 제3조 제1항 제1호 “별표1” 및 제25조의 ‘태양광발전사업’ 관련 기구 폐지 및 분장업무 조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련근거

- 조직개편 추진계획(안) (이사장방침 제215호, '15.12.4)
- 공단 상가운영처 정규조직화(안) 승인(보도환경개선과-4527호, '15.12.8)
- 2016년 태양광발전시설 민간위탁사업 교부금 미편성 안내(녹색에너지과-24389호, '15.12.4)

### 나. 절 차 : 이사장 결재 후 공포·시행

## 직제규정시행내규중개정내규(안)

직제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기구 및 정원)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“별표1”과 “별표2”를 조문변동 없이 별지의 “별표1”과 “별표2”로 한다.

제23조(기획조정실) 제2항의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5호로 하고, 제15호부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CS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
16. CS성과관리 및 서비스품질 매뉴얼 운영
17. VOC분석 및 모니터링 관련 업무

제24조(인사처) 제2항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제7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다.

7. 노사관계 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
8. 노사협의회 및 단체협상에 관한 업무 총괄
9. 노사현안 처리 및 대책 수립
10. 근로자고충처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11. 노동관계 자료수집 분석
12. 사내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
13. 기타 노사관계 업무

- 14. 급여 및 소득정산 등 세무에 관한 사항
- 15. 건강·산재보험,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 총괄
- 16. 구내식당 운영 등 상조회 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
- 17.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
- 18. 기타 임직원 복지후생 관련업무 총괄

**제25조(총무처) 제2항 제18호 “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”를 삭제한다.**

**“부칙”을 다음과 같이 “신설”한다.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 제1항 제1호의 “별표1”과 제25조의 ‘태양광발전사업’ 관련 기구폐지 및 분장업무 조정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b>제3조(기구 및 정원)① (생략)</b> 1. 기구는 별지의 별표1과 같다 2. 정원은 별지의 별표2와 같다.	<b>제3조(기구 및 정원)① (현행과 같음)</b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	조문변동 없이 “별표1”, “별표2”만 변경(별지 참조)
<b>제23조(기획조정실)① (생략)</b> ②기획조정실장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~22. (생략)	<b>제23조(기획조정실)① (현행과 같음)</b> ② (현행과 같음) 1~14. (현행과 같음) 15. CS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6. CS성과관리 및 서비스품질 매뉴얼 운영 17. VOC분석 및 모니터링 관련 업무 18~25. (현행 15~22와 같음)	
<b>제24조(인사처)① (생략)</b> ②인사처장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~6. (생략) 7. 급여 및 소득정산 등 세무에 관한 사항 8. 노사협의회 및 단체협상에 관한 업무 총괄 9. 의료·산재보험,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 총괄 12. 구내식당 운영 등 상조회 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13. 기타 임직원 복지후생 관련업무 총괄	<b>제24조(인사처)① (현행과 같음)</b> ②인사처장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~6. (현행과 같음) 7. 노사관계 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 8. 노사협의회 및 단체협상에 관한 업무 총괄 9. 노사현안 처리 및 대책 수립 10. 근로자고충처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. 노동관계 자료수집 분석 12. 사내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3. 기타 노사관계 업무 14. 급여 및 소득정산 등 세무에 관한 사항 15. 건강·산재보험,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 총괄 16. 구내식당 운영 등 상조회 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17.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18. 기타 임직원 복지후생 관련업무 총괄	
<b>제25조(총무처)① (생략)</b> ②총무처장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~17. (생략) 18.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19. (생략)	<b>제25조(총무처)① (현행과 같음)</b> ②총무처장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~17. (현행과 같음) 18. <삭제> 19. (현행과 같음)	
<b>부 칙</b> <b>&lt;신 설&gt;</b>	<b>제1조(시행일)</b>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 제1항 제1호의 “별표1”과 제25조의 ‘태양광발전사업’ 관련 기구폐지 및 분장업무 조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